

|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 | 2126066    |
| 의 퇴 인  | 김영식의원      |
| 회 답 일  | 2024.1.26. |
| 추 계 번호 | 23E5134    |

#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연장 등

【비용추계서】

## I. 비용추계 결과

□ 개정안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할 경우 재정수입 감소는 다음과 같음

- 재정수입 감소는 2025년 954억원, 2029년 4조 7,170억원 등 2025~2029년 5년간 총 13조 4,495억원(연평균 2조 6,899억원)으로 추계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소득세

| (단위: 억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5 | 2026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누적       | 연평균     |
|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<br>및 일몰연장<br>(안 제126조의2①,②) | -954 | -1,021 | -41,244 | -44,107 | -47,170 | -134,495 | -26,899 |

주: 현행 일몰기한이 2025년까지이므로,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동안 발생하며,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

## II. 재정수반요인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<br>제126조의2(신용카드<br>등 사용금액에 대한<br>소득공제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 및 소상공인 대상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 및 적용기한 3년 연장 등</li> <li>－ (현행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40%,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</li> <li>－ (개정안)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50%, 소상공인 대상 사용분 공제율 50%*, 적용기한 2028년 12월 31일</li> </ul> <p>*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경우에 대해 50% 공제율 적용</p> |

### 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#### 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| 연번 | 조·항(조제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추계여부 | 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안 제126조의2제1항, 제2항1호의 가목<br>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| ○    | 추계<br>(일몰 연장 및 전통시장 사용분<br>공제율 상향조정)          |
| 2  | 안 제126조의2제2항1호의 나목<br>(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)      | ×    | 기술적 사유로 비용추계 곤란<br>(소상공인 대상 사용분 공제율 상<br>향조정) |

#### 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##### □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5년 소득세 신고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전제

-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
  - －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,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세수효과 발생(징수 기준)
- 현행 일몰기한은 2025년까지이므로, 일몰기한 3년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7~2029년 동안 발생하며,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2024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

##### □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및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른 세수효과를 각각 추계하여 합산

-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조정 각각에 대해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,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
  - －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은 2018~2022년 연평균 증가율(4.8%)로 증가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-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대가를 지불한 경우 그 사용분에 대하여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안의 경우, 개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소상공인 대상 사용분에 대한 별도의 집계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비용추계 곤란
  - 현행 소상공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,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각각 15%, 30%의 소득공제율 적용
  - 따라서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한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결제수단(신용카드/체크·직불카드/현금영수증)별 사용액, 그 중 소상공인 사업자 대상 사용액, 개인의 소득세 신고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부재하고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자료에 의한 객관적인 추계가 불가능함

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변화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

### 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#### (1) 감면 실적

- 2022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따른 조세지출액은 3조 1,675억원임<sup>1)</sup>
  - 2021년 실적은 2020년 귀속소득에 대한 조세지출 실적으로, 2020년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세지원 대책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함에 따라 조세지출액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

1) ① [표 2] 기준 ① 2018년(2017년 귀속)부터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를 차등 적용하고, 중고자동차 구입분이 공제대상에 포함됨  
 ② 2019년(2018년 귀속)부터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%에서 40%로 인상되었으며,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도서·공연비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가 신설됨  
 ③ 2021년(2020년 귀속)에는 2020년 3월과 4월~7월기간 동안 사용액에 대하여 각각 30~80%, 80%의 공제율을 적용(기존 15~40%)하고, 총급여규모별 공제한도를 30만원 확대함  
 ④ 2022년(2021년 귀속)에는 공제항목별 공제율이 정상화(15~40%)되고,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5%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 사용분에 대해 10% 공제율 추가 적용

[표 2]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지출액

(단위: 억원, %)

|       | 2016<br>실적      | 2017<br>실적      | 2018<br>실적       | 2019<br>실적      | 2020<br>실적      | 2021<br>실적       | 2022<br>실적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조세지출액 | 18,444<br>(3.1) | 18,537<br>(0.5) | 21,176<br>(14.2) | 22,553<br>(6.5) | 24,698<br>(9.5) | 31,882<br>(29.1) | 31,675<br>(-0.6) |

주: ( )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

자료: 기획재정부, 「조세지출예산서」, 각 연도

## (2) 추계 방법

### □ 일몰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및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치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

- (일몰 연장) 2020년(2019년 귀속) 조세지출 실적치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세수효과 추계
  - － 「조세지출예산서」를 통해 현재 2022년(2021년 귀속) 조세지출 실적치까지 공개되었으나, 2021년(2020년 귀속)과 2022년(2021년 귀속)은 코로나19 관련 조세지원 대책에 따른 제도변화가 반영된 실적치이므로, 제도변화가 미미하였던 2020년(2019년 귀속) 조세지출 실적치 이용
  - － 2019년 조세지출 실적에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인원 증가율 및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율(소비자물가 상승률) 적용하여 일몰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
- (공제율 상향) 2021년 귀속 총급여규모별 전통시장 사용분에 공제율 인상분(10%p) 및 한계세율을 적용하여 세수효과 추계
  - －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 확대에 따른 세수효과는 개인별 총급여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상세자료(공제항목별 사용금액) 등이 있어야 추계가 가능하지만, 자료의 한계로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사용액 집계자료를 이용
  - － 신용카드 공제항목의 공제율 변경에 따른 공제금액의 변화는 개인별 기본공제 한도, 기본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액, 공제한도 초과분 중 추가공제 가능 금액(대중교통·전통시장 및 도서·공연 등 추가공제 항목의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짐)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, 이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총급여규모별 1인당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공제율 상향분(10%p)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공제받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

- 일몰연장 및 공제율 상향조정에 대한 기준연도 기준 세수효과 추계 후, 향후 세수효과는 기준연도 세수효과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추계하고, 두 세수효과 추계치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
  - 향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 인원은 2018~2022년 연평균 증가율(4.8%)로 증가하고,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<sup>2)</sup>을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

[표 3] 기준연도 이후 세수효과 증가율

(단위: %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| 2020 | 2021 | 2022 | 2023 | 2024 | 2025 | 2026 | 2027 | 2028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소비자물가상승률 (A)           | 0.5  | 2.5  | 5.1  | 3.6  | 2.4  | 2.2  | 2.2  | 2.1  | 2.1  |
|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(B) | 2.1  | 5.0  | 5.4  | 4.8  | 4.8  | 4.8  | 4.8  | 4.8  | 4.8  |
| 합계 (A+B)               | 2.7  | 7.5  | 10.5 | 8.4  | 7.2  | 7.0  | 7.0  | 6.9  | 6.9  |

주: 1.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3년까지는 실적치, 2024년부터 국회예산정책처의 「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」('23.10.)의 전망치  
 2.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은 2022년까지 실적치, 2023년부터 2018~2022년의 연평균 증가율(4.8%) 사용

### (3) 추계 결과

-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고,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5~2029년 동안 총 13조 4,495억원(연평균 2조 6,89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 -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에 따라 소득세는 2027~2029년 3년간 12조 9,01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  -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50%로 상향할 경우 소득세는 2021년 기준 742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([표 4] 참조), 이후 기간에 대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인원 증가율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시 2025~2029년 5년간 5,4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

2) 2023년 이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의 「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」('23.10.)의 전망치 활용

[표 4]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(2021년 기준)

(단위: 명, 백만원)

| 총급여액<br>규모 | 국세통계연보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인당<br>전통시장<br>사용금액 <sup>4)</sup> | 1인당<br>추가공제액       | 현행<br>1인당<br>과세표준 | 한계세율<br>(%) | 세수효과<br>(억원)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총급여인원 <sup>1)</sup> | 신용카드<br>공제인원 <sup>2)</su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A                   | B                          | C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$E=D \times 10\%p$ | F                 | G           | $H=-(E \times G) \times B$ |
| 합계         | 12,919,174          | 8,467,622                  | 0.8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-742.2                     |
| 1천만 이하     | 8                   | 0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0               | 4.5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0.0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5천만 이하   | 184,199             | 2,751                      | 0.1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1               | 5.2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0.0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천만 이하     | 867,728             | 144,342                    | 0.2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2               | 7.2 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-2.1                       |
| 3천만 이하     | 2,936,591           | 1,406,968                  | 0.3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4               | 11.2              | 6%          | -30.3                      |
| 4천만 이하     | 2,143,540           | 1,472,851                  | 0.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4               | 17.2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-89.3                      |
| 4.5천만 이하   | 913,909             | 714,454                    | 0.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4               | 21.8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-47.2                      |
| 5천만 이하     | 794,778             | 651,640                    | 0.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               | 25.0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-47.2                      |
| 6천만 이하     | 1,292,226           | 1,097,340                  | 0.5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5               | 30.3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-88.8                      |
| 8천만 이하     | 1,688,829           | 1,435,358                  | 0.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6               | 41.4              | 15%         | -130.9                     |
| 1억 이하      | 975,425             | 794,034                    | 0.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| 58.7              | 24%         | -127.1                     |
| 2억 이하      | 976,325             | 698,061                    | 0.6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| 96.2              | 35%         | -166.8                     |
| 3억 이하      | 92,291              | 39,761                     | 0.6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| 199.0             | 38%         | -9.8                       |
| 5억 이하      | 35,865              | 8,372                      | 0.6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| 327.9             | 40%         | -2.2                       |
| 10억 이하     | 12,980              | 1,429                      | 0.7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7               | 605.4             | 42%         | -0.4                       |
| 10억 초과     | 4,480               | 261                        | 0.7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0.08               | 1,939.8           | 45%         | -0.1                       |

주: 1)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의 총급여 인원으로 결정세액이 있는 자만을 포함

2)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있는 인원으로, 그 인원이 전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인원은 없는 것으로 함

3) 총급여규모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을 전통시장 사용 인원으로 나눈 금액

[표 5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5~2029년

(단위: 억원)

| 세수효과               | 2025 | 2026   | 2027    | 2028    | 2029    | 누적       | 연평균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전통시장 사용분<br>공제율 상향 | -954 | -1,021 | -1,093  | -1,168  | -1,250  | -5,485   | -1,097  |
| 일몰 연장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| -40,151 | -42,939 | -45,920 | -129,010 | -43,003 |
| 합계                 | -954 | -1,021 | -41,244 | -44,107 | -47,170 | -134,495 | -26,899 |

## 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## V. 작성자

☐ 성명

|         |     |     |
|---------|-----|-----|
| 국회예산정책처 | 분석관 | 과장  |
| 세제분석1과  | 박지원 | 박연서 |

☐ 대표연락처

|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성명  | 전화번호         | 이메일 주소                    |
| 박지원 | 02-6788-4662 | jwpark1209@assembly.go.kr |